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78호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1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관내 농어촌의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고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절근로자의 처우를 개선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마.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u>2023년 7월 17일까지</u>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l@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7

발의연월일: 2023. 7. 10.

발 의 의 원: 이천수·김영록·박강우·박선애·성보빈

심영석·안상우·전홍표·한상석 의원(9명)

찬 성 의 원: 강창석 · 구점득 · 권성현 · 김우진 · 손태화

이정희 · 홍용채 의원(7명)

1. 제안이유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관내 농어촌의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고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절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 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 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과 양해각서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창원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이나 농·어업법인(이하 "고용주"라 한다)에 대한 사전 교육
-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6.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 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비용
 -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약검사 비용
 - 4. 의료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2. 그 밖에 시장이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 토하여 지원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홍보)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외국인고용법]

-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 출입국관리법

-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 격을 가져야 한다.
 -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 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 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외국인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 ②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는 제1 항을 준용한다.
 -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제 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1. 10.>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	캐르기거세 레다카드 <u>기리 ㄸ드 최</u> 도비이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
20의2. 계절근로	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
(E-8)	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
	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